

#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10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「교통안전법」 개정(2006.12.28, 전부개정)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세부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 (안 제명)
- 나. 위원회 명칭 “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”로 변경 (안 제1조)
- 다. 마포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명시 (안 제2조)
- 라.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. (안 제3조, 제6조)
- 마.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의결하며,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음. (안 제8조)

### 3. 개정근거

가.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 (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

나.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 (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)

다.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8조 (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라.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13조 (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)

### 4. 조례안 : 따로붙임

#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# 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09. 7. 30. ~ 8. 19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9. 9. 24)

다.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 및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와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
2.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
3.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
4.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건설교통국장
2. 기획예산과장
3. 교통행정과장
4. 교통지도과장
5. 토목과장
6. 치수방재과장
7. 마포경찰서 교통과장
8.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4조(간사와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,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임기)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
2. 위원이 품위손상·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9조(관계행정기관 협의)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,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지급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.